

# 외국인투자 정책 현황과 과제

이성봉  
[서울여대 교수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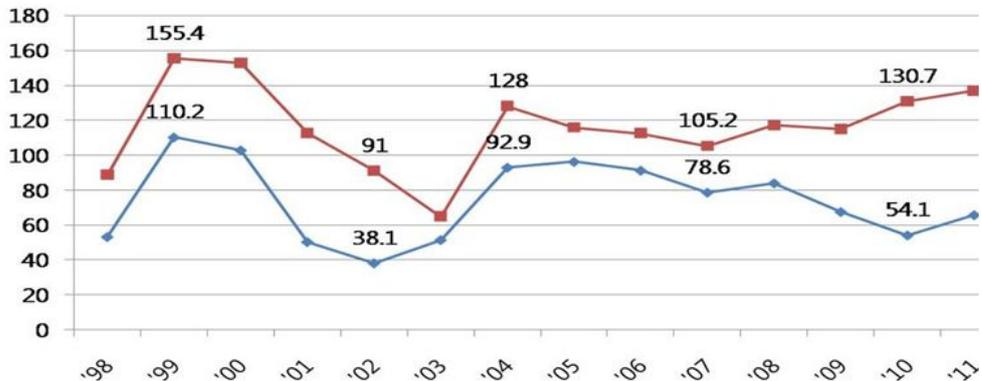
2012. 12. 14

# 1. 외환위기 이후 15년 외국인투자의 추이 및 평가

## ①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의 추이 분석

- 외국인투자는 외환위기 당시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자유화 확대 및 투자유치기반 마련으로 크게 증가
  - '98년 155.4억불을 기록한 이후 '02년까지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다 '04년 이후 120억불 전후의 신고액을 시현.
  - '0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이며 '12년말 150억불 신고 예상.
  - 도착액 기준으로는 '04-08년까지 매년 80-90억불이 유입되었으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억불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'12년말 90억불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\* (업종) '98-'11까지 누계액 기준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38.9%, 금융보험업 18.8%, 도소매업 11.4%, 부동산임대업 7.1%, 비즈니스서비스업 6.6%, 기타 17.2%임.
- \* (투자유형) 그린필드형 69%, M&A형 31%로 그린필드형 투자가 2/3이상임
- \* (신규/증액) 2000년대 들어 증액투자비중이 증가, 최근 3년간 증액투자 61.5%
- \* (투자국) 미국, EU, 일본 선진국 비중이 70%이상이지만 신흥국비중이 증가추세

<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>



자료원: 지식경제부, 외국인투자통계

## ② 투자유입 잠재력과 투자유입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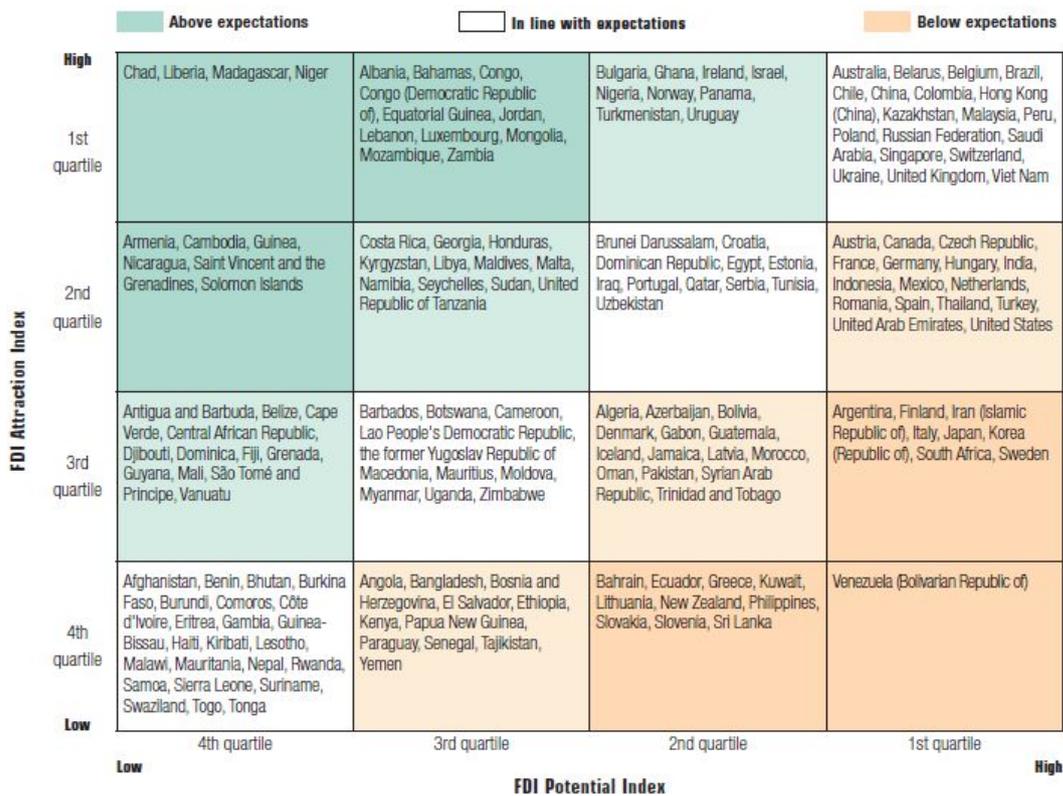
-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방 및 투자유치정책으로 FDI가 증대하였지만, 경제규모 등 투자유입 잠재력 대비 유입실적은 아직 낮음
- \* 한국의 FDI Stock/GDP는 2011년 기준 12.5%로 전 세계 평균 29.3%에 크게 미달
- \*\*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(2012)의 분석에 따르면, 한국은 투자유치잠재력지수(FDI Potential Index) 평가에서는 상위 25%에 속하지만, 투자유치지수(FDI Attraction Index) 평가에서는 하위 25%에 속함

<우리나라 GDP대비 FDI Stock 추이>

구분	2001	2002	2003	2004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IFDI(A)	53,208	62,658	66,070	87,766	104,879	115,774	121,957	94,679	117,732	127,047	138,917
IFDI/GDP	10.5	1.9	10.3	12.2	124	122	11.6	10.2	14.1	12.5	12.5

\* IFDI는 순유입액 기준, \*\* 자료원: UNCTAD

<투자유입 잠재력과 투자유입 실적>



자료원: UNCTAD, World Investment Report 2012

## 2. 외국인투자유치 성과 및 산업발전 기여도 평가

### ① 외환위기 이후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거시경제적 성과

○ 외투기업이 국내 제조업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%를 상회하는 수준임

\* 2010년 제조업은 10.6%, 서비스업은 4.2%를 차지(자료원: 지식경제부·Kotra,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, 2011)

○ 부가가치 및 수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투기업의 생산성 파급 및 국제수지개선 효과

\* 외투기업 무역수지흑자 '03년 32.1억불 -> '10년 61.3억불

\*\* 외투기업 부가가치의 금액 및 국내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(단위 조원, % )

구분	금액(조원)	비중(%)
전체업종	82.4	13.2%
제조업	49.6	16.4%
비제조업	32.8	10.2%

자료원: 지식경제부·Kotra,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, 2011

### ② 외환위기 이후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미시경제적 성과

○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, 생산성은 전후방 모두 긍정적 효과 확인, 고용은 긍정적인 전방효과 확인

\*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, 2009; Kotra,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, 2012

○ 외투기업은 조달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 및 한국경제 혁신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

\* 외투기업의 조달활동의 38.7%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고, 그 다음이 해외모회사 19.3%, 국내 대기업 19.3%, 기타 관계기업 11.0%순임.

\* R&D활동도 단순개량수준(26.1%)을 넘어 신제품·공정 개발(64.8%)비중이 확대

### 3.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

#### ①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

- 외국인직접투자(FDI)유치 정책은 사실상 1998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작
  - 1998년 9월 부족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 실시
    - \* 외환위기 이전에서 국내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 추진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추진이 제한적
  -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액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은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
    - \* FDI순유입액(UNCTAD 기준):'96년~'97년 47억 불→'99년~'00년 189억 불
  - 반면 투자된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반외자정서가 형성됐으며, FDI정책과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줄어드는 부작용 초래
- 2000년대 이후에는 다시 산업정책과의 연계 노력이 시도되었으나, 외환유입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나는 데는 한계를 초래
  -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FDI업무를 기획재정부(당시 재경부)에서 지식경제부(당시 산자부)로 이관('99년)
    - \* 이후 부품소재전용공단 사업, GAPS 사업 등 각종 산업발전연계정책 실시
  - 그러나 기본적인 국민, 공무원, 언론 등의 반외자정서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FDI가 국내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속
    - \* 2008년 FDI업무를 총괄하는 외투위원장이 기재부장관에서 지경부장관으로 바뀌면서 FDI정책을 본격적으로 산업정책과 연계할 수 있게 됨

### <FDI 관련 주요 정책보고서>

- 『외국인투자 전략과 대책』 (2003년) : 산업발전연계전략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으나, 구체적 정책수단이 미흡
- 『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3개년 계획』 (2008년) : 투자환경개선 중심
- 『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』 (2009년) : 산업발전 연계를 위한 유치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시도했으나 신성장, 녹색산업 위주 (주력산업연계 미흡)

## ② 최근 5년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주요 성과와 평가

□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권 상층부와 지자체 지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

○ 투자환경개선 3개년 계획(1차 '08.5, 2차 '11.5)을 통하여 투자환경개선 과제의 도출 및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국내외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실행

○ 고용창출, 지역발전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전 부처에 걸친 투자유치확대 노력은 미흡

\*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금액위주에서 고용창출위주로 전환 시도 등

\* 지자체의 경우는 단체장의 관심 하에 투자유치 부서의 위상이 급부상했으나, 중앙조직에서는 관련 기능이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는 등 아직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중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저조한 상황

○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지자체의 FDI 유치노력이 활발하게 추진 중

\* 인천 송도 등 일부 경자구역의 경우 최근 삼성바이오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함께 발전의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

\* 일부 경자구역의 경우 기반시설 구축과 투자유치가 부진한 상황

□ 그러나 FDI가 한국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에 비해 한국경제가 FDI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

\* 최근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나, 유치시스템 측면에서 실질적인 기여도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

### ③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 및 성과평가

- 글로벌스탠다드에 익숙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이에 미흡한 국내의 제도나 관행은 높은 외국비용을 유발
  - \*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3에서 한국은 종합 8위이지만 투자자보호 49위, 재산권등록 75위, 납세 30위 등에서 여전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.
-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기업특유 우위요소가 국내기업들에게 파급됨으로서 국내기업 성과제고의 동적 효과
  - \*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이전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잠재력 확충
  - \*\*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위한 강력한 유치수단 확보 필요
- 국가간의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불가피함
  - \* 중국: 경제특구 외국인투자에 최장 10년 조세감면
  - 싱가포르: 개척자지위(pioneer status) 외국인투자에 최장 15년 조세감면
  - \*\* 최근 아시아 경쟁국들의 법인세 인하추세:
    - 대만: 2010년 25%→17%;
    - 싱가포르: 2008년(20%→18%), 2010년(18%→17%).
    - 한국: 2009년 24.2%(법인세 22%, 지방세 2.2%)이하 이후 변함이 없음.
-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인센티브를 통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
- 공개된 기준에 근거한 조세감면위주 인센티브는 투명성과 행정용 이성 장점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협상력에 한계
  - \*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경우 심사를 통하여 최종결정하지만 투자분야가 고시된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임
  - \* 외국인투자지역, 경제자유구역, 자유무역지역,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업종과 투자금액 요건만 해당하면 자동으로 조세감면 부여.
- 투자유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높은 유치성과를 보였으나, 적용사례가 많지 않음
  - \* 현금지원제도의 경우 2004년 도입이후 총 6건에 478억원(지방비 199억원 포

함의 경우 677억원) 지원으로 총 8,351억원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1,766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시현

\*\* 현금지원제도의 예산규모가 크지 않고, 단년 예산원칙의 적용으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운영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투자유치 수단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음

○ 또한 투자인센티브를 받은 외투기업들의 국내고용 및 조달 등 투자의 긍정적 효과와 연계된 행위를 촉진시키는데 한계

\* 2010년 조세감면에 한도액을 도입하면서 일부 감면을 고용창출과 연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고용창출을 확대하는데 기여한다기 보다는 조세감면 수준을 감소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## 4. 외국인투자정책(지원제도)의 개편방향

### ① 앵커형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

○ 앵커형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(7년형), 현금지원, 입지지원 및 R&D 자금지원 등을 조합한 최고수준의 패키지형 인센티브 제공

- 앵커형 투자는 양질의 고용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,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외국인투자로 정의할 수 있음.

- 앵커형 투자는 연구개발활동에 적극적이고 특정 기술 분야에 있어 강한 흡수력(absorptive capacity)을 지닌 규모가 글로벌기업으로 현지국의 특정 지역 및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(Agrawal & Cockburn 2003).

- Giblin (2008)은 해외 앵커기업의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화가 더욱 촉진되고, 지역으로의 지식 이전이 활발해진다고 주장

○ 앵커형 외국인투자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, 투자금액 기준 등도 적용하지 않음

○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 및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, 인재양성 등

국가발전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인센티브 수혜여부를 결정하며, 인센티브 패키지 내용은 투자자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

- 앵커형 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의 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,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소속 투자평가소위원회를 IK 및 민간전문가중심으로 구성하여 투자의 전략적 파급효과를 평가
- 패키지형 인센티브의 내용은 투자자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, 이를 통하여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를 유도

○ 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등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앵커형 투자에 대해 최고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

- 싱가포르는 ‘선도기업 인센티브(Pioneer Status Incentive)\*’를 통하여 앵커형 투자에 대해서 최대 15년 법인세 100% 면제

\* “**projects that are very strategic and result in the creation of desirable industries in Singapore**”: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고도기술 및 고부가가치로 투자 또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투자로 싱가포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(고급인력배양, 신기술도입 등)하는 전략적인 투자.

\*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적용되며, 세부업종, 투자금액, 고용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은 없으며 투자유치협상을 통해서 동 지위를 부여.

- 말레이시아는 IT분야에서 MSC지위\*, BT분야에서 BioNexus지위\*\*를 부여하여 10년간 법인세 100% 면제

\* MSC(Multimedia Super Corridor): 글로벌 ICT(정보통신기술)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조성한 투자지역으로 동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수혜자격 부여

\*\* BioNexus: BT분야의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지위를 부여

○ 미국은 전기자동차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핵심분야인 자동차용 배터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LG화학을 유치하면서 파격적인 패키지형 인센티브\*를 제공함.

- \* LG화학이 미시간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
  - 미 연방정부가 전체 투자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억5000만 달러 현금지원
  - 미시간 주정부는 1억3000만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

## ②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확대

- 그동안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었고 서비스업 투자유치확대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인센티브제도는 미흡
  - 현재 서비스업 분야 인센티브는 산업지원서비스업(고도기술형 조세감면), R&D, 관광업 및 물류업(외국인투자지역형 조세감면)등 일부서비스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영
  -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등 파급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 FDI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필요
- 7년형 조세감면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를 현행 세부사업 열거방식에서 범주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 조정
  - 양질의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
- '10년 도입된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제도에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을 허용, 서비스업 FDI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
  - 감면 대상서비스업은 현행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업\*을 제외한 서비스업\*\*으로 하며, 일정 투자금액과 고용요건\*\*\*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을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공
    - \* 금융업의 경우 OECD 유해조세경쟁방지협약에 따라 조세감면제공 불가
    - \*\* 지식서비스, 산업지원서비스, 문화산업관련 서비스, 관광서비스
    - \*\*\* 금액 5백만불, 고용 50명 이상(예시)
  - 현재 소규모 단지 또는 건물로 제한되는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의 범위를 특정 개발지구 전체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범위 확대

### ③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, 지역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를 연계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개편

#### (1)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 제도의 개편

- 현행 고도기술 중심의 투자인센티브를 고용창출, 지역발전 및 산업경쟁력 제고(연관산업 발전 및 기술이전 효과의 극대화) 등 경제적 효과 연계형 인센티브로 개편
  - 현행방식(고도기술수반사업 660여개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면 7년 감면을 제공)은 급속한 기술발전 및 산업의 융합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미흡
  - 고도기술수반업종 상당수가 자본집약적인 사업이어서 직접적인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며 다국적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어 사업분야만 기준으로 삼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임
-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업종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'고도기술수반 전략유치업종'으로 범주화하되, 양질의 고용창출, 지역경제발전, 연관산업 발전, 기술이전효과 극대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
- 전략유치업종으로 범주화된 고도기술수반 전략유치업종에 해당되며, 사전적 투자요건 또는 사후적 이행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하는 방식으로 변경(아래 네 가지 중 하나 해당되면 조세감면)
  - 사전적 투자요건 조세감면
    - ① 국내기업과 합작투자(기술이전효과 제고): 국내기업 합작지분 50% 이상
    - ②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(지역개발 촉진): 균형발전법상 성장촉진지역 투자
  - 사후적 이행요건 조세감면:
    - ③ 고용이행 요건(고용창출 촉진): 유치업종별/투자금액별 고용이행수준 설정
    - ④ 국내조달이행 요건(연관산업 발전): 국내 구매액 비율 50% 이상

## (2)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의 경제적 효과제고 방안

- 현행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는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일정 투자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감면과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이 제공되는 방식으로 운영
  -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경우 외국 투자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대해 최고의 인센티브(7년 조세감면과 최대 100% 임대료 감면)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양적 투자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.
  -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하여 통합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각 단지의 발전전략에 부합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,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표준화된 생산여건을 추구하는 중견규모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.
-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는 대규모 투자 및 입지관련 지원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효과적인 투자유치 수단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인센티브 요건이 업종 및 투자금액에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담보하는데 미흡
- 외국인투자지역 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투자금액 요건에 고용 및 국내조달 요소를 추가.
  - 다만, 기존 외투자지역 제도가 투명성, 예측가능성 및 외국인투자자 니즈 부합성 등 투자유치수단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틀은 유지하되, 고용과 국내조달 등의 경제적 효과제고를 위한 요건들은 보조적으로 적용함.
  - 예를 들어 제조업분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3천만 불 이상 투자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되, 추가로 투자금액이 2천만 불 이상인 경우 고용 100명 이상 또는 국내 조달 50% 이상이면 개별형 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임.

## ① 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선방안

### <개별형 외투자지역 지정요건 개편방안>

업종	현행 지정기준	개정안
제조업	○ 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	○ 투자금액 3천만불 ○ 투자금액 2천만불에 고용 50명* 이상 또는 국내 구매 50% 이상
고도기술산업지원		
관광업	○ 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, 종합유원시설업 등	○ 투자금액 2천만불 ○ 투자금액 1천만불에 고용 30명 이상 또는 국내 구매 50% 이상
물류업	○ 투자금액 1천만\$ 이상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	○ 투자금액 1천만불 ○ 투자금액 5백만불에 고용 20명 또는 국내 구매 50% 이상
연구개발시설	○ 산업지원서비스업,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로 투자금액 2백만불 이상 (석사 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)	○ 좌동

\* 개별형 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외투기업의 투자금액 1백만불당 고용인원은 평균 1.6명으로, 제조업의 경우 현재수준의 고용을 가정할 경우 50명 고용요건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은 약 3천만불임(30백만불\*1.6명=48명)

## ② 단지형 외투자지역 조세감면요건 개선방안

### <단지형 외투자지역 조세감면요건 개편방안>

업종	현행 조세감면 기준	개편안
제조업	○ 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	○ 투자금액 1천만불 ○ 투자금액 5백만불에 고용 30명* 이상 또는 국내 구매 50% 이상
물류업	○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	○ 투자금액 5백만불 ○ 투자금액 3천만불에 고용 20명* 이상 또는 국내 구매 50% 이상

\* 단지형 외투자지역 고용요건은 개별형 외투자지역 수준의 두 배 수준으로 설정

### ③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의 고용연계 차등화 방안

- 외투지역의 임대료는 이미 조성원가의 1% 수준으로 감면된 상태이기 때문에, 추가적인 감면은 업종별로 일정 고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
- 고용수준과 연계한 임대료 감면 차등화를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온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제도의 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함
- 업종별(제조업, 관광업, 물류업)로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기준을 설정.
  - \*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대상 연구개발업의 경우 이미 고용요건이 있으며, R&D투자활성화 차원에서 기존 100% 감면을 그대로 인정.

#### <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감면 차등화 방안>

제조업	물류업	관광업	감면 비율
50~75명	15~20명	-	50%
75~100명	20~30명	-	60%
100~150명	30~60명	60~100명	70%
150~200명	60명~100명	100~150명	80%
200~300명	100명~150명	150~200명	90%
300명 이상	150명 이상	200명 이상	100%

- \* 관광업의 경우 단지형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별형 외투지역 최소투자요건(개편안)인 60명 고용요건에서 70%(개별형 외투지역 고용요건인 제조업 100명 및 물류업 30명의 경우 70% 감면 적용을 준용)

#### ④ 현금지원제도를 전략적 분야에 대한 유치수단으로 확대 개편

○ 외국인투자의 기여도에 따라 투자자와 협상이 가능한 현금지원제도가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요건\*이 까다롭고 지원수준도 낮아 투자유치 수단으로 역할 미흡

\* 지원요건은 1천만불 이상투자의 고도기술, 부품소재 또는 석사급 10명 이상 고용 R&D투자, 다국적기업 지역본부,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투자 등임.

\*\* 현금지원은 '12년 현재 총6건에 677억원(국비 478, 지방비 199) 지원되었으며, 지원수준은 투자금액의 약 10%전후 수준임

○ 현금지원의 대상사업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유치분야로 범주화하여 유치협상에서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

- 전략적 유치분야는 글로벌 산업발전 추이 및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정부의 산업정책방향\*을 고려하여 2~3년 단위로 재설정

\* 영국은 현금지원이 핵심 인센티브이며, 매년 전략적 투자유치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

○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하고, 투자사업별 지원규모도 크게 확대, 현금지원 수준이 투자유치에 경쟁력이 있도록 설계

\* 선진국의 현금지원은 투자지역의 낙후도에 따른 그 수준이 달라지나, 투자금액의 약 20%~50%까지 제공

\* LG화학의 3억 달러를 투자에 50%인 1억5000만 달러 현금지원

\* 현대자동차 앨러배마 11억달러 투자에 2억5000만달러에 달하는 직·간접적인 지원을 했고, 추가로 채용된 2600여 생산직 근로자의 기초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교육비를 주정부 부담

<아일랜드의 현금지원수준>

- 수도권 지역 : 투자금액의 17.5%(+ 중소기업 10% 추가)
- 중동부 지역 : 투자금액의 18%(+ 중소기업 10% 추가)
- 중서부 지역 : 투자금액의 20%(+ 중소기업 10% 추가)
- 낙후지역 : 투자금액의 40%(+ 중소기업 15% 추가)

○ 현행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매칭지원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, 예외적으로 지자체 매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단독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여 현금지원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

## ⑤ 기존 외투기업 확장형 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 도입

- 한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확대는 단순한 투자금액의 증대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자의 구전효과를 통하여 신규 외국인투자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에 버금가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
  - 외국인투자자의 증액투자에 대해서는 신규투자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이 제공되는 반면, 유보이익의 재투자를 통한 확장투자의 경우 별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 못함.
- 유보이익의 재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제공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상법 및 조세법 체계상 타당성이 결여
  - 외투기업 유보이익의 재투자에 직접적으로 조세감면을 제공할 경우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역차별적 혜택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음.
- 다만, 유보이익 재투자 방식의 확장 투자에 대해서 실질적인 면에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전략과 절차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이 현실적 대안임.
  - 유보이익을 재원으로 투자할 때, ① 배당을 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방안, ② 배당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, 두 방안의 조세상 결과는 유보이익이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통해서 형성된 것인지 여부, 투자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세율의 수준 및 투자국 현지에서의 배당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  - 배당을 하고 이를 재투자할 경우, 동 배당이 외투기업의 조세감면 이후 이익의 배당인 경우는 한국의 배당세가 감면되며, 여기에 투자국에서 간주세액공제 또는 소득면제방식의 이중과세방지방법이 적용되면 투자국 현지에서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음.
  - 이런 경우 배당하고 재투자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없다는

점에서 송금과 재송금의 신속한 절차(외국환은행 역외계정에 입금 후 출금)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재투자 사업의 조세감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사전에 이루어진다면, 배당후 재투자 방식은 결코 번거롭거나 조세부담을 증대시키지 않으며 확실하게 투자금의 인정과 정당한 조세감면 혜택으로 연결될 수 있음.

- 물론 이러한 최선의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진출 외투기업의 유보이익 재투자를 통한 확장투자의 경우 투자실행전략의 수립과 관련, 국제투자, 국제금융, 국제조세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함.
- 외투기업이 놓인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동 방안을 선택한 경우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주는 지원시스템을 마련. 유보이익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전략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IK에 '국제투자조세상담팀'을 설치함.
- 유보이익 재투자 계획이 있는 외투기업에 대해서 확장투자사업 자체에 대한 조세감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, 현금지원, 입지지원 및 국내 R&D자금 지원 기회 등을 종합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
- 확장투자사업 조세감면 사전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투기업이 배당 이후 재투자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을 갖고 배당과 재투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.
- 배당후 재투자를 확약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 및 외환거래 절차상 최대한 편의를 제공
- 또한 기존 외투기업의 확장투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자금의 조달 원천과 관계없이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- 기진출 외투기업으로 확장투자에 적극적인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지경부의 R&D 사업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도입

## ⑥ 창업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도입

- 한국의 인재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글로벌 기술 및 지식 서비스형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
  - 스위스, 싱가포르, 칠레 등은 외국인투자유치의 패러다임을 기업유치에서 인재유치로 전환, 글로벌 인재의 창업 허브로 발전한다는 국가의 성장전략을 추진
- 수도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및 지식 창업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들의 창업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
  - Invest Korea Plaza 및 판교글로벌R&D센터 등과 연계한 외국인 BI사업 추진
- 국내 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출연으로 민관공동의 '글로벌 창업 펀드'를 조성하여 유망 글로벌 창업프로젝트에 대해서 연구개발 등 창업자금을 최소 3년 이상 지원
  - 글로벌 창업 제안 대회를 전 세계 인재들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우수 창업팀에 대해서 지원
- 지식서비스형 글로벌 창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을 제공하고, 창업자금, 컨설팅지원, 공동연구지원 등 패키지형 지원제도를 정비
  - 지식형 외국인창업기업과 국내기업의 공동연구 추진시 평가가점 우대하는 등 기존 국내 창업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